

공동기기실 운영세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지침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기기실의 연구용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외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기사용료의 징수 목적)

1. 기기의 효율적 사용과 무료지원에 따른 불필요한 과잉사용의 방지
2. 기기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

제 3 조 (기기사용료 산정)

기존 공동기기실 장비 및 신규 도입기기의 기기사용료 산정 및 기 징수액의 변경 결정은 공동기기실에서 변경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보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제 4 조 (기기사용료 납부)

기기사용료로 징수되는 제수입금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회계규정에 따라 잡이익으로 편성 관리되며 사용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감사)

공동기기실 기기 사용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예산 회계법규에 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감사를 받는다.

제 6 조 (영수증 발부)

기기사용료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으로 발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(2011.01.19.)